



#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새로운 취급에 대하여

지금까지의 취급	새로운 취급
<p>①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류 자격</p>	<p>①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류 자격</p>
<p>② 대상 지역 모든 국가·지역</p>	<p>② 대상 지역 모든 국가·지역</p>
<p>③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<b>2019년 10월 1일 이후, 2021년 1월 29일까지 작성된 것</b></p>	<p>③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<b>2019년 10월 1일 이후, 작성된 것</b></p>
<p>④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 <b>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또는 2021년 4월 30일까지의 둘 중에 빠른 날까지</b> (주1)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이란 체재 중인 국가·지역에 대한 '상륙 거부' 및 '이미 발급된 사증(비자)의 효력 정지' 둘 다 해제된 날을 가리킵니다. (주2) 입국 제한 조치 해제일에 관한 국가·지역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 (<a href="http://www.moj.go.jp/isa/content/930005848.pdf">http://www.moj.go.jp/isa/content/930005848.pdf</a>)에서 안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④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작성일이 2019년 10월1일~12월31일 → <b>2021년 4월 30일까지(지금까지의 취급과 동일)</b></li> <li>• 작성일이 2020년 1월1일~2021년 1월30일 → <b>2021년 7월 31일까지</b></li> <li>• 작성일이 2021년 1월31일~ → <b>작성일로부터 "6개월간" 유효</b></li> </ul>
<p>⑤ 유효로 간주하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사증(비자) 발급 신청 시에 '받아들이는 기관' 등이 "앞으로도 계속,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"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※ 별첨된 참고 양식(<a href="#">별표 1용</a>, <a href="#">별표 2용</a>)을 참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.</p>	<p>⑤ 유효로 간주하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사증(비자) 발급 신청 시에 '받아들이는 기관' 등이 "앞으로도 계속,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"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※ 별첨된 참고 양식(<a href="#">별표 1용</a>, <a href="#">별표 2용</a>)을 참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.</p>